

● **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-245호**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
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16일

금융위원회위원장

- 다 음 -

1. 상 호 : 하나금융투자(주)
2. 지정 내용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의3제1항제1호에
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
3. 지정업무범위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77조의3제3항 제1호에 따른
신용공여업무
4. 지 정 일 : 2019. 7. 10.